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총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안 제4조)
- 나.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 다만 법령·조례 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다.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홍보(안 제6조)
- 라. 보조금 지원희망 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안 제7조)
- 마.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안 8조)
- 바.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8조, 제19조)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단체별 배분은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심의위원회구성, 심의대상, 위원회기능등에 대한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것임
- 전체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2004년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2조), 지원대상(제4조), 지원범위(제5조) 신청방법(제7조), 심의 및 결과통보(제8,9조) 위원회구성, 기능 및 운영(제 10,11,12조) 의견청취(제18조)등으로,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작성 시달된 것으로 타법규등과 문제가 없을 뿐아니라, 심의위원만 적절히 선정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지만,
  - 제15조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겠으나
  - 제10조 제5항에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항에 회의록 기록의무사항을 추가하고, 대신 제15조는 삭제하므로 조를 단순화시키면 더 좋을것으로 판단됨.